

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9월 30일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9월 13일 포항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9월 13일

다. 상정일자

- 제318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 -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(2024. 9. 30.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박은숙 평생교육과장)

가. 개정이유

- 「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가 개정됨에 따라 평생교육관의 수강료에 대한 다자녀 가구 감면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 규정 개정(안 제11조)
- 수강료 면제 대상 확대(안 제12조)
 - (현행) 세 자녀 이상 둔 가정
 - (개정) 「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
- 시설 사용권의 전대 금지 규정 삭제(안 15조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

다. 관계법령

- 「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 제2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박종율)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가 24년 3월 개정 (다자녀 가구 기준 3자녀 → 2자녀, 24.03.27.) 됨에 따라 평생교육관의 수강료에 대한 다자녀 가구 감면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,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, 본 조례가 개정되면 지역내 다자녀 가구가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개정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며, 교육 프로그램 또한 다자녀 가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